

## 2026년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, 시장진입 촉진 및 판로확대 기회 제공 등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「2026년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」을 진행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3월 3일  
군포산업진흥원장

### I 사업 개요

- 사업명** : 2026년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
- 사업기간** : 협약체결일 ~ 2026. 10. 30.(금)
- 지원규모** : 16개사 내외 /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/ 현물·인건비 불가
  - ※ 지원금의 20%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
- 지원내용** : 온·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 - ※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분야 중복신청 가능

지원분야	지원내용	지원금
동영상 제작	o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	500만원
온·오프라인 광고	o TV 및 라디오 광고	500만원
	o 온라인 : SNS, 모바일, 배너, 키워드 등	300만원
	o 오프라인 : 지면, 버스/지하철 광고, 신문/잡지, 옥외광고 등	200만원
홈페이지 제작	o PC,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※ 호스팅, 도메인 등 유지보수(제작 외 비용)만을 위한 비용은 지원 불가	300만원
전시회 참여	o 국내 전시회/박람회 참여 - 참가비, 부스임차료, 부스장치비, 현장 홍보물 등	300만원
	o 해외 전시회/박람회 참여 - 참가비, 부스임차료, 부스장치비, 현장 홍보물, 운송료 등 ※ 항공권, 숙박료 등 체류관련 비용은 지원 불가	500만원
홍보물 제작	o 지물로 인쇄되는 홍보물 - 카탈로그, 브로슈어, 전단지, 리플릿 등	200만원

※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 부담

## II 모집 개요

**지원대상** : 군포시 관내 중소벤처기업

※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벤처기업

**모집기간** : 2026. 3. 3.(화) ~ 3. 20.(금) 16시 까지

**지원 제외기업**

- (중복지원 불가) 최근 2년 이내 진흥원 및 정부, 유관기관 지원사업 중 동일한 사업내용 및 아이টে으로 수혜를 받은 기업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에 해당되는 업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, 휴·폐업 중인 기업
- 신청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업
-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군포시 관외로 이전 기업
- 기타 제출 자료의 허위 기재 또는 지원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기업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도 상기 결격사유가 확인될 시 지원 취소

## III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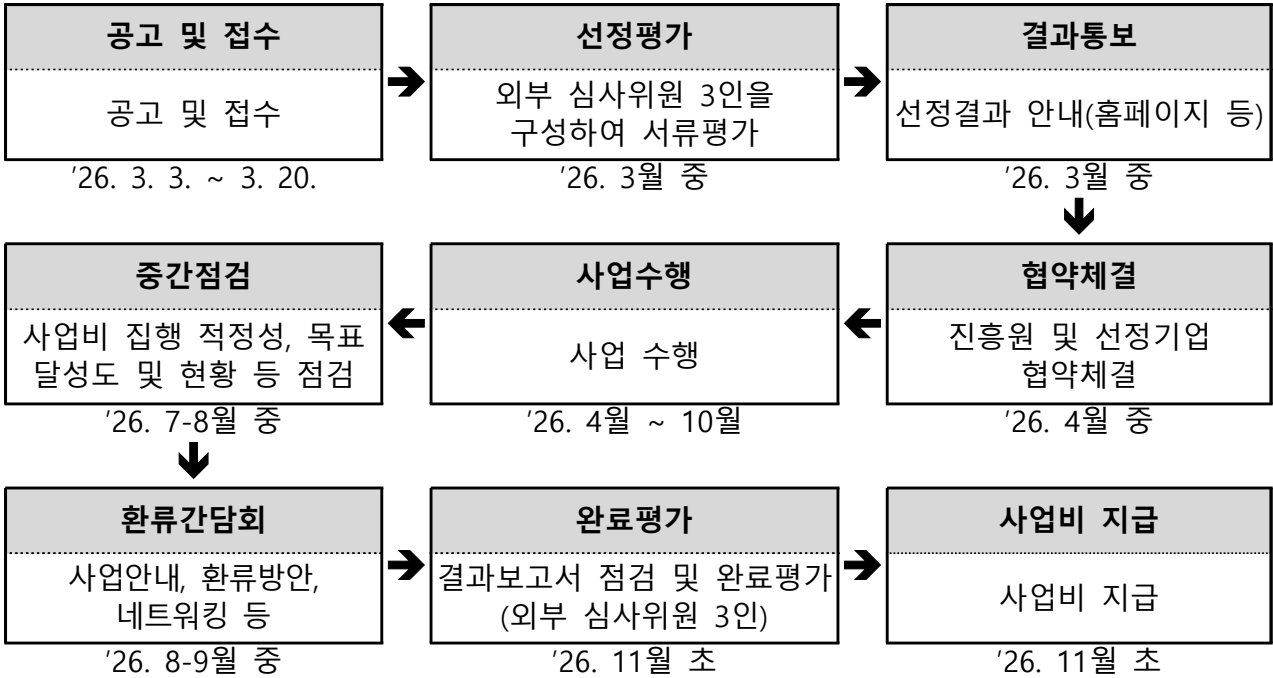
**신청방법** : 담당자 E-mail 접수(ecsohn@gpipa.or.kr)

**제출서류**

구분	내 용	제출수량
필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신청서(양식)</li><li>· 사업계획서(양식)</li><li>· 평가결과 수락 및 중복지원 금지 약속서(양식)</li><li>· 지방세, 국세 완납증명서(유효기간 내)</li><li>·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</li></ul>	1부
첨부서류 (해당자에 한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최근 3년간 매출액 증빙자료 (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)</li><li>·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</li><li>· 인증서(벤처기업, 이노비즈, 여성, 장애인 등)</li><li>· 기타관련서류(지식재산권, 수상 등)</li></ul>	

## IV 진행절차 및 선정방법

### □ 진행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**선정평가** : 신청자격 및 선정 제외기업 여부 확인 등 적합성 평가  
- (평가항목) 사업계획 타당성, 경쟁력, 적절성, 기대효과 등

평가항목 (배점)	배점기준
사업계획의 타당성 (20)	- 지원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(20)
사업 경쟁력 (30)	- 사업 마케팅 전략의 차별성(15) - 기업 및 제품의 시장 경쟁력(15)
사업계획의 적절성 (40)	-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(15) -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및 판로계획(15) -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및 활용계획의 타당성(10)
기대효과 (10)	- 매출증대, 고용창출, 시장확대 등(20)

### □ 선정방법

- (서면평가) 외부 평가위원 3인의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- (선정방법) 평균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 16개사 내외 선정
- (예비 지원기업 선정) 최종 선정기업 중 중도포기 및 사업수행 불가 시

선정 평가점수(평균점수 70점 이상)에 따라 예비 순위 부여

※ 기업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사유에 의한 탈락(포기)기업이 발생할 경우 예비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

□ **결과통보** :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

□ **협 약** : 진흥원 및 최종 선정기업 간 협약체결

□ **지원금 지급**

- (지급시기) 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(증빙서류) 제출, 해당 서류 검토 및 완료평가 후 '적정'판정 시 지원금 지급(100% 후지급)
- (지급방법) 선정기업에 직접 지급
- (지급조건) 협약 기간 내 결과물 완성 및 비용 집행이 완료된 건에 한해 지급

## V 유의사항

□ **사업신청**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, 중복지원,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수 있음
-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 범위 등이 조정될수 있음
- 서류 보완 요청 시,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

□ **사업수행**

- (사업포기)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·정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할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(사업내용 변경)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 변경 신청서 공문 제출  
ex) A제품의 홍보 동영상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B제품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등
- (사업비 변경) 사업비 집행계획이 변경될 시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비 변경 신청서 공문 제출  
ex) A홍보채널 200만원, B홍보채널 300만원 계획이었으나 A홍보채널 300만원, B홍보채널 200만원 등 사업비 산출 근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- (조건상실) 협약기간 동안 모집공고 내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

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
- (부정청구) 협약종료 이후에도 사업비 부정청구(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사용 등) 발생 시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
- (기타)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(담당자 이메일, 구두 공지사항 등)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

#### □ 사업비 집행

- 사업비(지원금+기업부담금)엔 부가가치세, 송금수수료, 사업비 초과분 및 결과물 제작 외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 불가함
-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 집행해야하며, 협약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건은 모두 불인정함
- 사업 완료 후 비용 집행건에 대해 세금계산서, 송금확인증 등 기타 사업내용에 따라 요청하는 증빙 필수

□ 문의처 : 군포산업진흥원 기업혁신팀(☎031-380-7143)

[별첨 1] 지원사업 신청서

[별첨 2] 기업현황 및 기업소개

[별첨 3] 지원사업 계획서

[별첨 4] 평가결과 수락 및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

[별첨 5] 개인(기업)신용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

[별첨 6] 선택제출 증빙자료 목록